

●●● 미국 ●●●

# 법무부 반독점국, LCD 패널 가격담합 참여 임원 2인에 대한 형벌부과 합의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4월 30일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참여한 대만의 치메이(Chi Mei)사 전직 임원 2명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치메이는 2009년 12월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대하여 2억2천만 달러(약 2,6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유죄합의한 6번째 기업에 해당한다.

이번 형벌부과에 합의한 치메이 임원은 전 회장인 Jau-Yang "J.Y." Ho와 전임판매부장인 Chu-Hsiang "James" Yang이다.

이들은 2001~2006년과 2004~2006년 기간 동안 다른 회사 간부들과 만나 TFT-LCD 패널 가격에 합의하고 합의대로 견적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합의 준수 여부 감시를 위하여 판매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두 임원은 14개월의 징역 및 5만 달러의 벌금형과 9개월의 징역 및 2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합의하고, 법무부의 담합 관련 이후 조사에도 협조

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전 세계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LG디스플레이, 일본의 샤프(Sharp), 세이코(Seiko), 히타치(Hitachi), 대만의 치메이, 청화(CPT) 등 6개 회사에 대하여 총 8억6천만 달러(약 1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참여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였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08년 10월 4억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 부과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 미국 ●●●●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원칙 관련, 미국내 주요 입법 및 각 주별 법 집행 동향



**지**난 2007년 6월 연방대법원은 Leegin(리진) 판결을 통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경쟁법 적용원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복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되어 의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주법(州法)을 근거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은 공동 법정익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브랜드간 경쟁촉진을 통한 친(親)경쟁적 효과가 있는 바, 합리원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경쟁법 학자 및 법률가 사이에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경쟁법 적용원칙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Leegin 판결에 찬성하는 측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가 축적해 온 브랜드의 내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35명의 주(州)감찰총장을 포함한 반대하는 측은 '가격인하 기회 보호'가 '브랜드 가치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인 허브 콜(Herb Kohl) 의원은 Leegin 판결을 반복하는 내용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법안(Discount Pricing Consumer Protection Act; Leegin Repealer)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지난 3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과거에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입법 노력이 실패한 바 있어, 최종 통과 여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Varney) 법무부 독

금차관보가 Leegin 판결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위 입법 노력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바니 차관보는 "합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현실적으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거의 항상 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미국 각 주(州)의 동향을 살펴보면, 35개 주의 주감찰총장이 Leegin 판결 반복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들은 별도의 주법을 제정하여 Leegin 판결을 반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뉴욕주, 코네티컷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기존 주법을 근거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계속 당연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주법을 적용한 사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미용제품 제조업체인 더머퀘스트(DermaQuest)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인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Act) 위반을 근거로 제소한 바 있다. 동 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동 사건은 종결되었다.

지난 3월, 뉴욕주 검찰은 침구류 제조업자인 템퍼페딕(Tempur-Pedic)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뉴욕주 상법(General Business Law) 369-a조를 근거로 제소한 바 있다. 동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뉴욕주 검찰이 뉴욕주의 반독점법인 도넬리법(Donnelly Act)이 아닌 상법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법규정은 반독점법과는 달리 시장확정,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주 검찰이 당연위법 법리를 통하여 소송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미국 ●●●

## 연방대법원, 스포츠리그 상표사용권 판매 관련, “NFL 소속 각 팀은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미** 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5월 24일 판결을 통하여 “스포츠리그의 팀 트레이드마크 판매에 관해서는 NFL(National Football League: 미식축구리그) 소속 32개 팀을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건은 기존에 NFL 팀 로고(Team Logo) 모자를 생산하던 아메리칸 니들(American Needle)의 제조로 시작된 것이다. American Needle은 지난 2000년 NFL이 소속 32개 팀의 공식 로고 모자 생산 및 판매권한을 리복(Reebok)에게만 배타적으로 10년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merican Needle과의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NFL의 행위가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는 소속팀간 공동행위라며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NFL은 축구경기라는 상품은 단일팀을 통하여 생산될 수 없으며 2개 팀 이상이 참여한 공동생산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스포츠리그 전체를 1개의 경제주체(Single Entity)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동 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은 NFL을 1개 경제주체로 보아 American Needle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American Needle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NFL의 팀 로고라는 상표사용권 판매는 NFL 단위의 1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NFL 소속 32개 팀이 각각 별개 경제주체로서 행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스포츠 게임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스포츠 운영규칙 결정 등에 있어서는 리그를 단일의 경제주체로 볼 수 있으나, 트레이드 라이선스(Trade License) 판매에 관해서는 각 팀이 잠재적 경쟁자”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협력행위가 경쟁법 심사대상

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별개 경제주체 간의 결합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건의 경우 ① 각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고 ② 관중을 유치하고 선수 및 코치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각 팀은 경쟁하고 있으며 ③ 모자 제조사에 대해서 각 팀은 로고 공급자로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개 경제주체인 NFL 팀 간의 결합행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경쟁법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NFL 측은 미식축구게임이라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NFL 팀간 협력행위에 경쟁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2개 이상 팀의 협력이 필요하고 각 팀이 NFL 브랜드 홍보라는 공통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팀 트레이드마크의 공동 라이선싱과 같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 팀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NFL과 같은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경우는 상품의 성공적 생산을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협력의 필요성이 공조행위를 독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너트(Nut)와 볼트(Bolt)에 비유하였는데, “너트와 볼트는 함께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너트와 볼트 생산자간 합의는 여전히 셔먼법 집행 대상”인 점을 지목했다.

단,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NFL의 행위에 대한 셔먼법 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향후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바탕으로 NFL 소속팀간 합의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 EU ◆◆◆

## EU 집행위,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의 가스공급망 개방안 수용



**E**U 집행위원회는 5월 4일 독일 에너지 기업인 E.ON이 제안한 가스공급망에 대한 자발적인 개방조치를 포함하는 시정안에 대하여 Commitment Decision을 채택하고 경쟁법 위반조사를 종결하였다.

'Commitment Decision'은 미국의 동의명령과 유사한 EU의 제도로서,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에 근거를 두고 있다.

Commitments Decision에 의할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EU 집행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불이행할 경우, EU 집행위는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ON이 제안한 시정안의 내용으로는 1단계로 2010년 10월까지 E.ON의 가스공급망의 15%를 개방하고, 2단계로 2015년까지 독점사용용량을 H-gas(고열량 가스, LPG) 공급망의 50%, L-gas(저열량 가스, LNG) 공급망의 64%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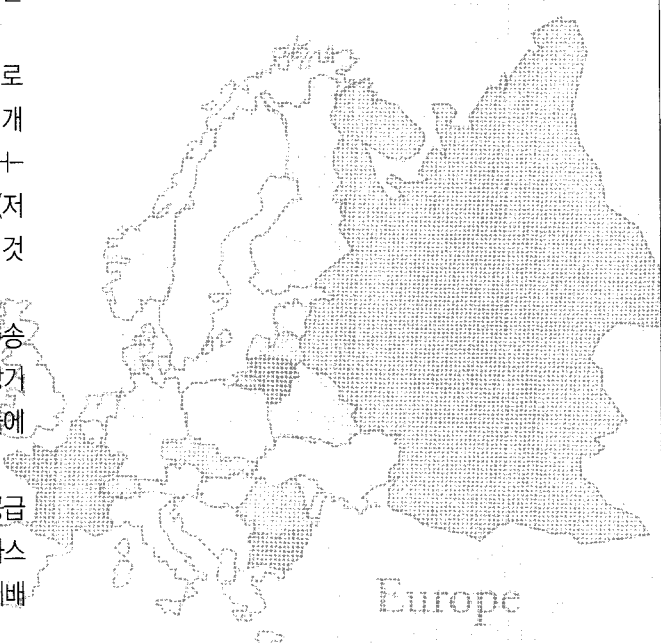
EU 집행위는 그간 설비규모가 제한된 가스의 수송 및 저장시설 대부분에 대하여 특정 사업자가 장기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사실상 신규 사업자들에게 대한 시장 진입 봉쇄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왔다.

본 건의 경우에도 E.ON이 자신이 보유한 가스공급망 사용에 대한 장기 사용권을 선점하여 독일 가스 시장에서 경쟁자의 접근을 봉쇄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U 집행위는 과거에도 GDF Suez(프랑스)가 제출한 유사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Commitment Decision 형식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본 건은 신규 사업자의 운송·저장시설에의 접근을 보장하여 가스공급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장기계약물량의 축소라는 행태적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EU 집행위가 에너지산업 실태조사(2005~2007년) 이후 주요 독과점 에너지기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취한 10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 EU ●●●

## EU 집행위, 수직거래에 대한 경쟁법 적용규정 개정



**E**U 집행위원회는 4월 20일 제조·유통·소매업자 상호 간의 상품·서비스 공급·유통계약(Vertical Agreement)에 대한 EU 경쟁법상 허용·금지행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세부규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Vertical Agreement 관련 경쟁법 적용대상을 기존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제조업자에서 동일한 점유율을 가진 유통업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보다 더 큰 협상력을 보유하면서 유통산업을 주도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으로 유통분야의 협상력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 규정(Commission Regulation No 2790/1999)에 의하면, 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이면서 공급계약 내용에 가격고정 등 심각한 경쟁제한행위(Hardcore Restrictions)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조·유통업자간 공급계약 체결시 기업은 자유롭게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 판매수량 및 판매대상 지역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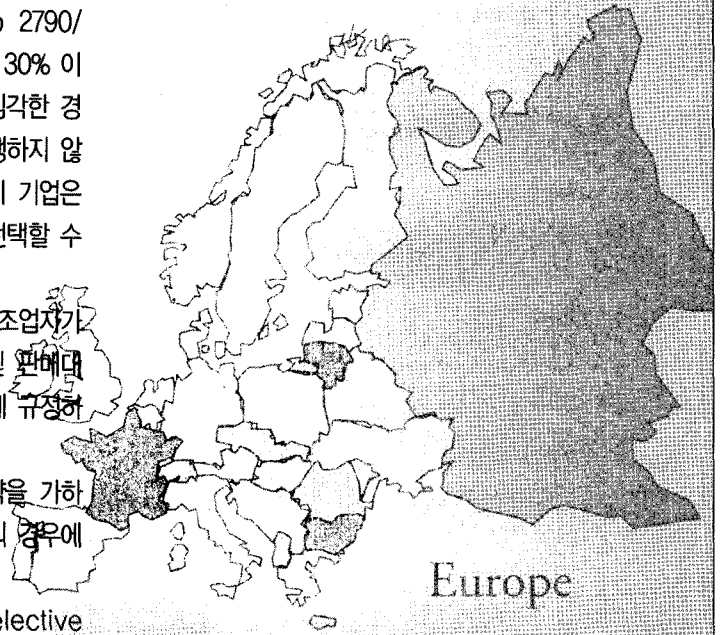
특히,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 특정한 형태의 공급방식의 경우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적 판매(Selective

Distribution)의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유통업자의 다른 지정유통업자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자유로운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독점적 유통(Exclusive Distribution)의 경우, 특정한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영업구역 밖의 지역에서의 판매 요청에 대응한 온라인 판매(Passive Sales)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

다만, 제조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 및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EU 집행위, 자동차 유통 및 정비분야의 경쟁법 적용면제제도 개정안 채택



**E**U 집행위원회는 5월 27일, 자동차 유통 및 정비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일괄제외규정을 개정(Commission Regulation(EU) No 461/2010)하였다.

이는 경쟁법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EU 집행위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개정안을 만든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

EU의 자동차 유통·정비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규정은 지난 1985년 도입되어 1995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2023년 5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舊)규정(Commission Regulation(EC) No 1400/2002)에서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40% 이하의 점유율을 가질 경우에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업자 등은 EU 경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자동차 애프터서비스(A/S)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품질 보증 및 자동차 부품 공급 등에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품질보증(Warranty)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지정 정비소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정비소는 부품을 자동차 제조사나 전문 부품 제조사 등 어디로부터든지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급 거절이나 제한행

위를 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판매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망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딜러(Dealer) 보호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상(딜러) 간의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등을 폐지하였으며, 단일 브랜드 의무(Single-branding Obligation)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고 동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였다.

‘단일 브랜드 의무’란 제조업체가 판매상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공급자로부터만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망간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조항은 201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유럽내 자동차 판매 및 A/S 분야의 경쟁 및 거래형태를 사실상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동 시장을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를 위하여 반드시 브랜드 정비소를 선택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정비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부담의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도 단일 브랜드(Single-branding) 또는 다(多) 브랜드(Multi-branding) 등 자사의 판매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인 입장에서 자유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 영국 ●●●

# 공정거래청, 최근 도입한 약식심사제도 활용해 대형마트간 공동구매협정 허용



**영**국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은 지난 4월 27일 Makro(마크로)와 P&H 두 대형마트간 공동구매협정에 대하여, 올해 3월에 도입한 약식심사제도(Short-form Opinion)를 통하여 심사의견을 발표했다.

'약식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간 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청이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사례는 약식심사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영국의 대형마트인 Makro와 P&H는 공동구매협정을 맺기에 앞서 공정거래청에 동 협정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청은 공동구매를 통하여 동일 공급자에 대한 가격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제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체간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Makro와 P&H는 공동구매협정을 체결하되, 일반적인 자료 이외에 민감하고 구체적인 사업정보는 교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약식심사제도란?

약식심사제도는 경쟁제한적인 수평적 합의를 금지한 규정인 EU 협약 제101조 및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제1장이 혁신적인 사업 구상 등 유익한 합의마저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약식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EU 협약 제101조나 영국 경쟁법 제2조에 대한 새로운, 혹은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질의이어야 하며, 소수의 업체가 아닌 다수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일 것 둘째, 약식심사 이전에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인 합의일 것 셋째, 경쟁자간 수평적 합의일 것 넷째, 영국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합의일 것 다섯째, 해당 합의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약식심사를 위한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사실설명서와 공정거래청의 의견이 공개되는 데에 동의할 것 등이다.

공정거래청은 약식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요건충족 여부 및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2~3개월 이내에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첫째, 관련 이슈에 대하여 EU와 영국의 판례나 경쟁당국 의결,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충분한 선례의 존재 여부 둘째, 공정거래청의 심사의견이 공개적으로 개진될 필요성 셋째,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하는 공정거래청의 심사 가능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한편, 유럽내 법원이나 경쟁당국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이슈(Issue)를 이미 다룬 경우와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질문인 경우 등에는 약식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공정거래청의 의견은 향후 EU집행위나 유럽사법재판소, 항소법원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유사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청의 법 집행에 대한 어떠한 단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Engl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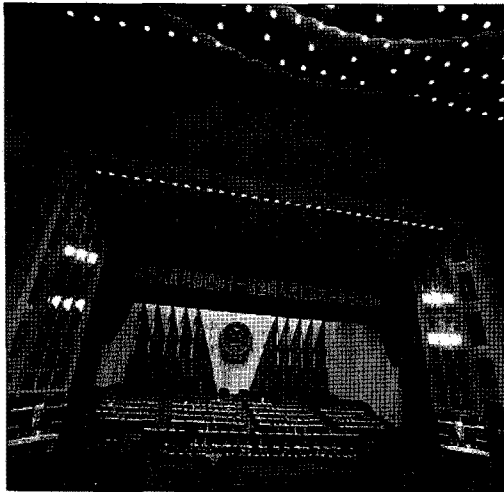
●●●● 중국 ●●●●

## 공상행정관리총국, 반독점법 관련 3개 하위규정 초안 마련



**중** 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반독점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월 25일 반독점법 관련 3개 하위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의견 수렴 대상 3개 규정(초안)은 독점협약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권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제한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이다.



독점협약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은 반독점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독점협약(카르텔 등)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제조·판매 수량 제한, 판매·원자재 시장 분할, 신기술 및 시설 비 구입과 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 거절 등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가능한 시정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은 반

독점법 제7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 및 법 적용 대상행위, 적용 제외 대상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제한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은 반독점법 제32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행정권을 남용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행위 세부내용, 법 위반 판단기준, 법 위반시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체제 전환한 중국의 특수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 ●●●

# 복건성 하문시 물가국, 위생식기제조사 가격담합 구두경고 조치



**중** 국 복건성 하문시 물가국은 위생식기가격을 담합한 제조사 및 관련 협회에 대하여 구두 경고했으며, 이에 제조사 및 관련 협회가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다.

하였다. 이에 위생식기 제조사 및 협회는 위생식기 가격담합을 자진시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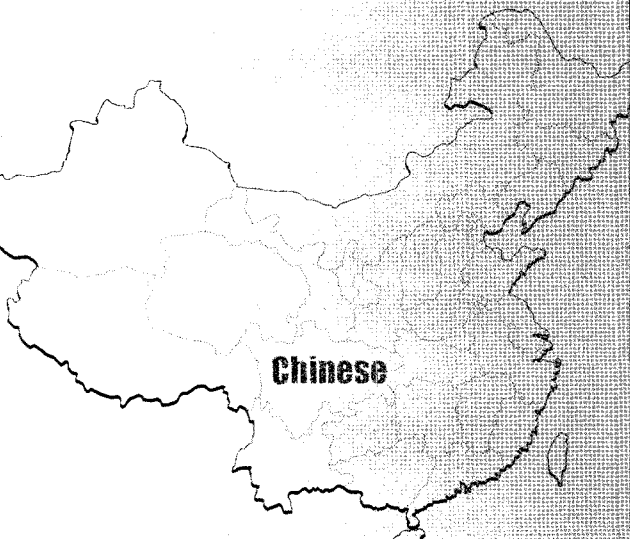


복건성(福建省) 식기제조업협회 하문사무소(이하 "협회"라 한다)는 4월 19일 하문시(廈門市) 소재 28개 위생(항균)식기 제조사를 소집하여 5월 1일부터 위생식기 1세트를 시내에는 인민폐 0.8원(한화 약 130원)에, 시외에는 인민폐 0.7원(한화 약 114원)에 인상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하문 위생식기 가격인상에 관한 회의요록'을 작성하고 참여 제조사들이 서명하였으며, 각 제조사는 인민폐 5,000원(한화 약 81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합의 내용을 준수한 제조사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합의 내용을 위반한 제조사의 보증금을 몰수하는 내용에도 동의하였다.

동 행위에 대하여 하문시 물가국은 가격법 제14조 및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을 위반한 가격담합의 혐의로 4월 27일 조사에 착수하여, 구두경고 조치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공정취인위원회, 중소기업자 보호시책 추진현황



**일** 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등에 따라 하도급사업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거래 전반의 공정화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18일부터 '중소사업자 거래 공정화 추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사업자 거래 공정화 추진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취인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이동상담'을 실시하게 되는데, 2010년 3월말까지 35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또한, 대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요구당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지소 등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개별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2010년 2월말까지 3,52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설명회와 상담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청법의 개요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정취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대기업·원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가 있었거나 각종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각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등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업종별 강습회를 2010년 2월말까지 총 16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공정취인위원회는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과 공동으로 원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하청법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매년 11월 발송하고 있다. 이는 연말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격 후려치기', 하청대금 감액, 지급 지연, 할인이 곤란한 어음(장기어음) 교부행위 등 하도급사업자의 자금 회전을 막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년에는 약 2만여 개

사업자에 대하여 하청법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2009년 11월 20일에는 이를 확대하여 약 3만여 개(원사업자 약 2만9,600개, 사업자단체 약 700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도급사업자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010년 3월에도 662개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하청법 준수를 추가 요청하기도 하였다.

넷째, 하청거래 이외에도 중소기업자의 거래공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운영하면서, 그 준수현황과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소매업자 350개사와 납품업자 6,000개사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특정 하주(荷主)가 물품의 운용 또는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의 특정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운영하면서, 그 준수현황과 하주와 물류사업자 간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주 8,426개사와 물류사업자 11,621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담 T/F 구성하고, 2009년도의 서면조사 등에 기초하여 과거에 하청법 위반행위가 많았던 도로화물운송업, 일반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소매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곱째, 권고사항 이행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권고 조치한 사건 중 원사업자의 규모와 지역 특성 등을 기준으로 4건을 선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원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서면조사대상인 자본금액이 큰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하도급사업자의 범위를 2008년도 16만 명에서 2009년도에는 20만 명으로 크게 확대하였다.